

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3년 6월 27일
행정·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3년 6월 1일

나. 제출자: 강서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3년 6월 1일

라. 상정일자: 제29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

행정·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 상정·의결(2023. 6. 27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자치행정과장 김성태)

제안이유

현행 조례상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나 조례 조항의 불명확한 부분을 개정하고, 우리구 주민자치 여건을 반영함으로써 주민자치회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

주요내용

가. 주민자치소양 강화 교육 의무 이수 조항 삭제(안 제7조, 제9조)

나. 위원 추천 비율 조항 삭제(안 제8조)

- 다. 분과위원회 참여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, 위원의 주민자치 활동에 사익 추구 금지 조항 신설(안 제11조)
- 라. 자치회장, 자치부회장 중임 제한 규정 추가(안 제14조)
- 마. 정기회의 개최 횟수 조정 단서 추가, 분과위원회 회의 규정 삭제(안 제18조)
- 바. 주민총회 개최 횟수 조정 단서 추가(안 제19조)
- 사. 주민자치협의회 임원 중 감사 삭제, 임원 중임 제한 규정(안 제26조)
- 아. 주민자치협의회 정기회의 횟수 조정(안 제28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분권법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 제27조 ~ 제29조, 「공직선거법」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)
- 다. 합 의 : 해당 없음
- 라. 기 타

1) 입법예고(2023. 2. 24. ~ 2023. 3. 16.) 결과: 의견 있음

- 제12조(위원의 해촉) 제3항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하는 기준을 ‘재적위원 3분의 2’ 에서 ‘재적위원 과반수’ 로 완화하여 주민자치회 현장 여건 반영 (접수된 의견 전부 수용)

2) 부패영향평가 결과: 의견 있음

- 제8조(위원의 위촉) 제2항 ‘순위를 정해 예비자를 선정할 수 있다’ 는 규정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는 해석의 여지가 있으므로 공개추첨 결과에 따라 정해진 순위라는 것을 명시하도록 개선요구 (개선의견 전부 수용)

3) 규제사전심사 결과: 해당 없음

4) 성별영향평가 결과: 해당 없음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장석현)

가. 개정 취지

- 본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전반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 운영 여건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주민자치의 내실화 및 탄력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 내용

- 안 제7조 및 제9조는 주민자치회 진입 장벽을 낮추어 공평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원 선정 또는 연임 시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소양 강화 교육(이하 “주민자치학교”)1)을 이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함
- 안 제8조는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정원의 100분의 60은 공개 모집으로 선정하고 나머지 100분의 40은 해당 동 소재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선정하게 하는 “위원 구성 비율”을 삭제하여 탄력적인 위촉이 가능하게 하였고, 부패영향평가 결과 의견을 수용하여 예비자 선정은 공개추첨 결과에 따라 순위를 정하도록 명시하여 위촉의 투명성을 강화함

1) 주민자치학교

- 가. 내 용: 강서구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또는 연임에 필요한 주민자치소양 강화 교육
나. 대 상: 전동 주민자치회 위원
다. 세부 교육내용: 총 6시간

구분	세부 강의 내용	비고
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	주민자치회 위원의 역할과 책임 등	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
지방분권과 주민자치	주민자체 제도 역사 및 제도적 특징 등	
지방자치와 지방재정	지방재정의 필요성 및 주요 문제 등	

- 안 제11조는 위원의 분과위원회 참여 관련 강행규정(“하여야 하며”)을 임의규정(“할 수 있으며”)으로 변경하여 활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,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
- 안 제12조는 입법예고 중 접수된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자치위원의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하는 기준을 ‘재적위원 3분의 2’ 이상에서 ‘재적위원 과반수’ 의결로 완화하여 주민자치회 현장 운영 여건을 반영하였음
- 안 제14조는 주민자치회의 장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기존 자치(부)회장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²⁾이 가능한 것에서 한 차례만 중임³⁾이 가능하게 변경하고 중임 관련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음
- 안 제18조는 매월 1회 개최하도록 하는 주민자치회 정기회의를 필요한 경우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격월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월 1회 이상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규정을 삭제하여 보다 자율적이고 실용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였음

2) 연임: 정해진 임기가 끝난 후 다시 계속하여 선거에서 선출되면 그 임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음

3) 중임: 직위나 직책을 다시 맡는 것을 의미하며, 중임을 제한할 경우 다시는 그 직책을 맡을 수 없음

- 안 제19조는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등 연 1회 「주민총회」 개최 시, 필요한 경우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횡수를 별도로 정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마련하여 동별 주민자치회 관련 결정 권한을 강화하였음
- 안 제26조 및 제28조는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·자문하고자 하는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협의회」(이하 “협의회”라고 한다) 관련 임원 중 “감사”를 삭제하고 임기를 정비하는 등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개선함

다. 종합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를 운영함에 있어 현행 조례상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 동별 운영여건 등을 반영하여 탄력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위원 위촉 시 획일적인 “위원 구성 비율”을 삭제하여 자율성을 확대하였고, 필요한 경우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정기회의 및 주민총회 개최 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별 결정권을 강화하여 주민자치회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※ 붙임 관계 법령 1부.

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

제27조(주민자치회의 설치)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·면·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.

제28조(주민자치회의 기능)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,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.

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
2.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관계 법령,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

제29조(주민자치회의 구성 등)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, 구성,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□ 공직선거법

제112조(기부행위의 정의 등)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.

4. 직무상의 행위

- 마.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